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사건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노정희(54세·사법연수원 제19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형사2부 소속인 노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형사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짐에 따라 담보상태였던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형사2부에 배당됐긴 했지만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과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삼성 뇌물 등 최대 쟁점에 대해 1,2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올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현재 최씨와 이 부회장 사건은 모두 대법원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지난 10월 17일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항소심 및 상고심 등 상소심에서는 심급별로 각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장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한 상태다.

※ 노정희 대법관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63년 10월7일 광주 출생 △광주동신여고 △이화여대 법대 △춘천지법 △춘천지법 원주지원 △수원지법 △의원면직(변호사 개업) △인천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부장 △서울고법 고법부장 △법원도서관장

법무매거진



강제징용 손배소·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0월 30일 대법 전원합의체 결론

-강제징용 손배소 사건은 ‘사법농단’ 피해 사건... 대법원 판단에 주목  
-대법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완전히 사라질 수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판결이 이달 30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같은 날 결론이 나온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의 판결은 3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 등 5건의 사건도 같은 날 상고심이 선고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지난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결, 원고패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던 사건이다.

2013년 7월 파기후 환송심(4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 측이 파기후 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지금까지 5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 2012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는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처벌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



정하지 않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역시 합헌으로 봐왔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사유로 인한 징총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시 현재는 종교적 사유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사실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30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인용)

## 법무매거진

# 판사, 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판사와 검사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도 기소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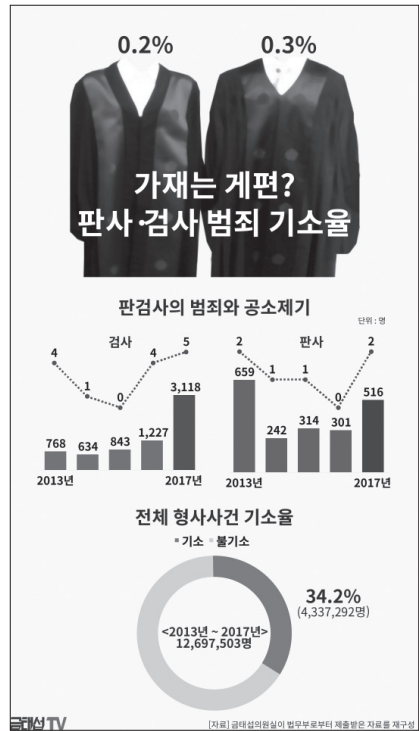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공소제기(기소)는 14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공소 비율은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반면 5년간 접수된 1269만 7503건의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은 433만 7292건을 기소했다. 기소율은 34.2%에 이른다. 1%도 채 되지 않는 판·검사 사건의 기소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 인용)



## 법무매거진

서울중앙 등 5개 주요 지법에  
‘경력대등재판부’ 내년 시범 실시



법원이 지법부장판사급 중견 법관들로만 구성된 합의부인 ‘경력대등재판부’를 신설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재판장도 3인이 교대로 맡는 형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은 내년 2월 이후부터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해 시범 운영한다. 지위나 기수, 경력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실질적인 ‘3자 합의’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구성은 지법 부장판사급인 법관 경력 16년차 이상 판사로 하고, 가장 연차가 높은 판사와 가장 연차가 낮은 판사의 기수 차가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5 기수’ 이내로 구성하는 방안이 가

장 유력하다. 다만 2~3기수 이내로 좁히자는 의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이나 ‘사건’을 기준으로 교대로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건을 기준으로 나뉘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각 법원은 우선 민사항소부 시범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지법 형사항소부 실시도 검토 중이다. 현재 대전·대구·광주·부산은 각 1~2개 재판부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미정이다. 다른 법원에도 간담회 경과 자료 등을 공유해 향후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3자 합의를 통해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경험과 경륜이 높은 법관들도 구성된 재판부의 재판으로 당사자의 신뢰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지난 8월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시범실시’를 위한 1차 간담회를 연 뒤 지난 5일 2차 간담회를 열고 시범 실시할 법원의 의견을 듣고 실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법원들은 각 사정에 맞춰 항소부나 합의부에 일정 규모의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사회의를 거쳐 최근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조직된 서울중앙지법은 시범 운영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의견수렴과 검토가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7일 한 차례 더 간담회를 열고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만든다면 매뉴얼에 담길 내용과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주심 지정 여부 △재판장 지정방식 △재판장과 비재판장의 (주심)배당비율 등 재판부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은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각 법원이 사정에 맞게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를 위한 의결 사항과 맞닿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 내 수직적 위계질서를 재편하고 사실심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部)’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바 있다.

(법률신문 인용)



## 법무매거진

#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작부터 반쪽 우려 나오는 이유



–원청이 하청·협력업체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어…사각지대 있어 ‘백화점 입사 과정도 거치지만 백화점 보호는 받지 못해’, ‘현재로선 원청 사업주의 선의에 기대야…재개정안 필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하청·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호법 개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사업주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업주의 감정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파견·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포함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임금 노동자 1만8천여명 중 31~41%에 해당하는 560만~740만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하청·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감정노동자는 전체의 20%가 넘을 것이라는 게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측의 추산이다.

현장에서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입점해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LVMH 전하영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백화점에도 모두 면접을 보고 입사한다.”며 ‘백화점 교육과 매출관리, 직원관리를 백화점 직원들과 똑같이 하면서도 보호받을 의무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폭언과 폭행 같은 고객들의 ‘갑질’ 상황에서 원청은 제3자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한 백화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직원이 폭행을 당했지만 원청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고객이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해도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법 시행 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원청업체에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에 나설 것을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사업주의 선의에 기대는 것에 한계가 있어,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은 ‘법을 이행하는 당사자인 사업주들이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감정노동자들을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보호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취임… 헌재 정상화

법조인 동정

이종석(57세, 사법연수원 제15기)·이영진(57세, 사법연수원 제22기)·김기영(50세, 사법연수원 제22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월 18일 취임했다. 국회의 늑장 인선으로 기능 마비 상태가 이어졌던 헌법재판소는 한 달 만에 정상화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재동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세 재판관에 대한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이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 정치적 견해·종교·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하여 중립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고

민을 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소장 등 헌법재판관 5인이 퇴임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석태·이은혜 재판관은 지난달 21일 취임했지만 국회 선출 몫 3명은 여야 대치로 인선이 늦어졌다.

앞서 여야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교섭단체별(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로 각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이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추천)·이종석(한국당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청문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표결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돌연 민주당 추천의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며 국회 추천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이석태·이은혜 재판관 임명 강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이 18일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행은 야당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1일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판관을 지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이들을 임명했다.

아울러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하며 재판관 선출안 본회의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대치 속에서 현재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기능을 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 23조 제1항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평의 등 심리 절차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공백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를 정면

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현재 공백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계속됐지만 여야는 이들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본회의의 표결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선출안 국회 통과 당일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들 3인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이종석 헌법재판관 약력



이 종 석(李 棕 錫) 1961. 2. 21.

1979.	경북고등학교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판사/담당관)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판사/담당관)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동경대학 교육 과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	수원지방법원장
2018.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영진 헌법재판관 약력



이 영 진(李 榮 眞) 1961. 7. 25.

1980.	남강고등학교 졸업
1984.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9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청주지방법원 판사
199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1997.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동경대학 교육과전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담당관실 판사/담당관
2006.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08.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2011.	사법연수원 교수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기영 헌법재판관 약력



김 기 영(金 基 穎) 1968. 4. 9.

1985.	홍성고등학교 졸업
199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1.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 석사
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2000.	듀크대학 교육과전
20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2003.	특허법원 판사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201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